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6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문성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용일, 김형재,
김혜지, 박상혁,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병운,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견이 지닌 한민족의 민중 집단문화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 시합의 장으로서 대중화 및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대중화, 관광 상품화 등 시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결련택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결련택견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결련택견이 지닌 민간 무예 문화로서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련택견”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무예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하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고시된 공동체 종목으로서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 문화를 말한다.
2. “결련택견 전승공동체”란 서울시에 소재하고 택견을 전승·보급·발전시키기 위한 단체나 개인을 말하며,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결련택견이 서울의 고유한 무예 문화인 택견 경기의 장으로 대중화되고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써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결련택견 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결련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결련택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결련택견에 참가하는 택견 선수 및 지도자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련택견 관련 교육·홍보·축제·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결련택견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사항

6. 결련택건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7. 결련택건의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결련택건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결련택건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련택건의 날) ① 시장은 결련택건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진흥을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결련택건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결련택건의 지원) ① 시장은 결련택건 전승공동체가 결련택건 관련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련택건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결련택건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결련택건 진흥과 활성화 등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101600000046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문성호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3.10.23.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결선택전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결련택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5조(결련택전의 날), 제6조(결련택전의 지원), 제7조(사업의 위탁) 등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결련택전 진흥계획 수립 등)에서 서울특별시 결련택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관 광체육국에서 기추진¹⁾하는 유사사업이 있어 확인결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 다만, 용역을 통한 진흥계획 수립 시 추가재정 소요가 있을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437,500천원(연평균 287,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87,5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5조(결련택전의 날)의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세계인의 날 행사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행사운영비 17,500천원을 준용
 - 제6조(결련택전의 지원)의 지원은 타 지자체(충주시 등)의 사업²⁾(붙임 참조)을 참고하여 택전대회 및 시민 대상 택전교실 등 운용비 지원을 가정하여 비용을 추계
 - 제7조(사업의 위탁)은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을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1)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체육정책과-27509(2022. 11. 8.)

2) 충주시 체육진흥과 택전관련 예산 중 일부분 준용 - 세계택전대회 지원(200,000천원), 찾아가는 시민택전교실 지원(20,000천원), 시민택전체조 경연대회 지원(10,000천원), 송암배 전국택전대회 지원(40,000천원)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437,500천원(연평균 287,500천원)

- 총비용 = 택전의 날 행사 운영비 + 결선택전 지원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택전의 날 행사 운영비(안 제5조)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87,500
	결선택전 지원 비용 (안 제6조)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50,000
	소계(b)	287,500	287,500	287,500	287,500	287,500	1,437,500
□ 총 비용(b-a)		287,500	287,500	287,500	287,500	287,500	1,437,500

○ 택전의 날 행사 운영비 = 87,500천원

= 연간 택전의 날 행사운영비 × 5년

= 17,500천원 × 5년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세계인의 날 행사운영비(17,500천원) 준용

※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 : 세계인의 날(5.20)을 기념하여 외국인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 마련 /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

○ 결선택전 지원 비용 = 1,350,000천원

= 연간 결선택전 지원비용 × 5년

= 270,000천원 × 5년

- 충주시 체육진흥과 택전관련 예산 준용

※ 세계택전대회 지원(200,000천원), 찾아가는 시민택전교실 지원(20,000천원), 시민택전체조 경연대회 지원(10,000천원), 송암배 전국택전대회 지원(40,000천원) 준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붙임] 2023년 충주시 전통무예진흥(택견) 관련 예산

(단위: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합 계	270,000
세계택견대회 지원	200,000
찾아가는 시민택견교실 지원	20,000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 지원	10,000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지원	40,000

자료 : 2023년 충주시 예산서 발췌